행복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5678서울도시철도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일부개정 시행알림

1. 관련근거
가. 사규관리규정 제15조(사규의 시행)
나. 법무처-3358호('15.11.06.)『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일부개정(안) 심의결과 알림』
다. 안전지원센터-5430호('15.11.20.)『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및 동 시행내규 개정(안) 확정』

2.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
가. 주요 개정 내용
○ 국토교통부「철도시설의 기술기준」(제2015-722, 15.9.30) 개정사항 반영
- 용어변경 : 승강장안전문→승강장안전문설비, 가동문→승강장안전문, 비상문→안전보호벽(비상문), 선로출입문→안전보호벽(선로출입문), 기관사출입문→안전보호벽(기관사출입문)
- 용어신설 : 안전보호벽
○ 정기검사 점검항목 변경사항 반영
- 헤더박스상태(수직천정판 제외) → 승강장측 헤더박스상태, 선로측 헤더박스마감판넬 상태(추가)
나. 시행사규

사 규 명	시행번호	시행일	소관부서
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	규정 제867호	2015.11.26.	안전지원센터
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	내규 제585호		

붙 임 1.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1부.
2.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 1부.
3.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시행내규 1부.
4.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

수신자 나1~나43,다1~다43,라1

대리 **도금수**	처장 **하성우**	실장 11/26 **김성완**

협조자

시행 법무처-3569 (2015.11.26.) 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mrt.co.kr
전화 02-6311-2037 전송 02-6311-4288 / dks0605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